■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사형집행조서

등 록 기 준 지			
주 거			
성 명		교 도 소 수 용	
. . . 생 만 세			

위의 사람에 대하여 . . . 법원에서 죄로 선고한 사형의 판결이 확정되어, . . .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그 형집행명령이 있었으므로, . . . 시 위의 교도소 내 현장에서 공소청 검사 및 교도소장 이 참여하고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.

교도소장은 수형자를 확인한 후 위의 확정판결에 따라 사형을 개시할 것을 알리고 현장에서 교수의 방법으로 집행한다. 교도소 의무관 은 교수절명 후 사망을 검시하고 다시 5분이 경과한 후 포승을 푼다.

이 형 집행은 같은 날 시 분에 착수하여 같은 날 시 분에 끝난다.

. . .

교도소 현장에서 공소청 검 사 ㊞

교도소 교정관 ㊞

210㎜ × 297㎜(백상지 80g/㎡)